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0호서식](2019.03.20 개정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**자산교환명세서**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자산교환 법인

① 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대표자 성명		④업종(영위기간)	
⑤본점소재지			

2. 상대방 법인

⑥ 법 인 명		⑦사업자등록번호	
⑧대표자 성명		⑨업종(영위기간)	
⑩본점소재지			
⑪자산교환법인과의 관계		⑫ 교 환 일	

3. 양도한 사업용자산 명세

⑬자산명	⑭소재지	⑮면적(㎡)	⑯취득일	⑰용 도 (사용기간)	⑱시 가	⑲장부가액

4. 교환 취득자산명세

⑳자산명	㉑소재지	㉒면적(㎡)	㉓상대방 취득일	㉔상대방의 용도(사용기간)	㉕취득후 용 도	㉖시 가	㉗상대방 장부가액

「법인세법」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④·⑨업종란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에 따라 적고, 해당 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.
2. ⑪자산교환법인과의 관계란은 교환당사법인간의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기입합니다.
3. ⑱·㉖시가란은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,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